

#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규제의 동향

- 일본을 중심으로 -

고 재 종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탄소배출권 거래 방법 및 거래 시장

1. 서 설
2. 탄소배출권 거래 방법
3.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 III.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응한 일본의 법적 전개

1. 서 설
2. 온난화대책법의 제정
3. 배출권에 대한 금융법 및 기타 업법상 취급
4. 카본 · 오프셋

### IV.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응책

1.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전망
2. 법적 측면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대응책

## I. 들어가는 말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등장한 「탄소배출권 거래」는 영어의 Emissions Trading에서 유래된 것으로 「배출량 거래」, 「배출 거래」, 「배출범위거래」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절대량인 배출 「량」 그 자체가 아니라, 배출 「권」이기 때문에, 「배출권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sup>1)</sup>

이러한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92년 리오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협약의 채택, 1997년 채택되고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 2001년 마라카시 합의문 채택(이는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2007년 발리로드맵, 2009년 코펜하겐에서의 새로운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2013년 발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GHC)의 감축을 위한 의무와 행동강령을 담고 있는 2005년 발효되어 2008년 본격 시행에 들어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2007년 12월 채택되어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의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확정한다는 소위 ‘발리 로드맵(Bali Roadmap)<sup>2)</sup>으로 인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1차 공약기간 동안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sup>3)</sup>으로서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감축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sup>4)</sup> 또한 우리 정부도 최근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안으로 확정하는 수순에 들어갔다.<sup>5)</sup>

따라서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동향과 법적 측면에서 각국의 대처 방안 중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자 한다.

## II. 탄소배출권 거래 방법 및 거래 시장

### 1. 서 설

본 장에서는 탄소배출권의 거래 방법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더불어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平湯直子, “排出權取引制度の概要”, 「KEO Discussion Paper No. 111」(2007. 12. 10), 4頁.

2) 조용수 “글로벌 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 「Monthly Export Insurance Magazine」(한국수출보험공사, 2008. 7. 8), 4쪽.

3) 세계의 공장 ‘중국’ 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1위 국가를 기록했으며, 2위는 미국, 3위는 러시아, 4위는 인도, 5위는 일본, 6위는 독일, 7위는 캐나다, 8위는 영국이 차지하였다(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 10. 12).

4) 구정환,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시장 도입과제”, 「주간금융브리프」(한국금융연구원, 2008. 3. 8~3. 14), 3~4쪽.

5) 매일경제, 2009. 11. 6자.



## 2. 탄소배출권 거래 방법

### (1) 거래 방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거래 방법에 따라 Cap and Trade 방식과 Baseline and Credit 방식이 있다.<sup>6)</sup> 먼저 Cap and Trade 방식이란 배출목표 설정 방식으로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을 설정한 다음 배출 범위를 배분하고, 과부족분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여 그 결과 삭감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Baseline and Credit 방식은 배출량 계산 방식으로 배출 삭감을 행함에 따라 배출이 감소한 경우에 삭감분의 크레딧이 부여되고 그 밖에 매각한 차기 목표달성을 위하여 बैं킹이 가능한 제도이다.<sup>7)</sup>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전자의 경우 「각 배출원에 사전적으로 배출 범위를 배분」하는 것임에 대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Baseline과 비교하여 「삭감을 달성한 각 배출원에 사후적으로 배출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출 범위의 배분이나 참가의 자유도(自由度)의 면에서 전자가 사전적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사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선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국·각 지역의 배출권거래의 대부분은 Cap and Trade 방식이다.<sup>8)</sup>

### (2) 구체적인 예

구체적으로 전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EU ETS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2008~2012년 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의무<sup>9)</sup> 당사국의 배출 감축 목표치에 의해 해당국의 배출권(Assigned Amount Unit: AAU)이 산정되면 각국의 배출권 배정위원회(National Allocation Plans: NAP)에 의해 민간 부문의 각 배출원별로 배출권(Allowance)이 할당된다. 2008~2012년 기간 중 1990년 수준 대비 8%의 감축 목표를 할당받은 EU의 경우 각 회원국별로 다시 배출권을 할당하고 회원국들은 자국의 감축 목표치에 맞추어 주로 발전시설 등 주요 민간배출시설에 대해 배출권을 할당한다. 이런 방식을 통

6) 이 외에도 Bench-marking 방식이 있다. 이는 추정된 표준적인 기준배출량을 가지고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정확한 추정이 곤란하나 각 배출 주체의 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平湯直子, 앞의 글, 4頁).

7) 平湯直子, 앞의 글, 4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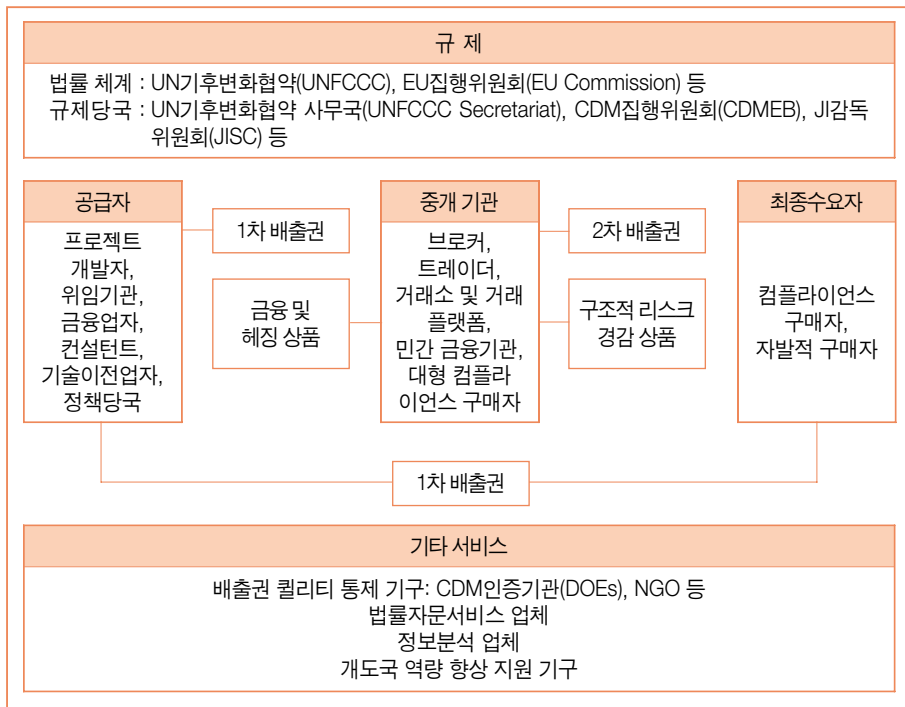
8) 平湯直子, 앞의 글, 4頁; Cap and Trade 방식에 대해서는 国内排出量取引制度の法的課題に関する検討会, 国内排出量取引制度の法的課題について(中間報告)(2009. 4. 7), 4頁을 참조.

9)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1992년 6월 유엔의 환경개발회의(UNCED)에 의하여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의거하여 매년 열리는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에서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시작돼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최문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금융법상 논점”, 「비교사법(제15권 제3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9), 5쪽).

하여 EU는 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규제하고 있다.<sup>10)</sup>

이어서 배출권을 할당받은 민간기업 등 배출원은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사용 연료전환 등의 수단을 통해 자체 감축 노력을 전개한다. 만약 기간 중 허용된 배출권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경우 추가적인 감축분을 내다 팔 수 있으며, 배출허용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른 배출원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및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등을 통해 생성된 크레딧을 구매해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그림 1〉 글로벌 탄소시장의 기본구조와 주요구성원<sup>10)</sup>



### 3.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시장, 컴플라이언스 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0) 조용수, “글로벌 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 『Monthly Export Insurance Magazine』(2008. 7. 8), 5쪽.



(1)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거래시장

할당량 거래시장(Allowances Market)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되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기업 간에 거래하는 시장으로 Cap and Trade(C&T) 거래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시장으로는 EU ETS, 미국의 CCX, 호주의 NSW 등을 들 수 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이렇게 각국에 할당하여 거래되는 배출권을 EUAS(European Union Allowances)라고 한다.<sup>12)</sup> 이러한 할당량 거래시장은 배출권 전체 시장의 약 79%(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EU-ETS 거래시장이 2007년 20.6억 CO<sub>2</sub>t, 501억 달러 규모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NSW 거래시장은 2007년 0.25억 CO<sub>2</sub>t, 2.2억달러 규모이고, CCX 거래시장의 경우는 2007년 23억 CO<sub>2</sub>t, 72백만 달러에 해당되었다.<sup>13)</sup>

반면 프로젝트 거래시장(Project-based Market)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크레딧<sup>14)</sup>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CDM, JI가 대표적이다. CDM의 시장 규모는 2007년 1, 2차 시장을 합하여 7.9억 CO<sub>2</sub>t, 129억 달러 규모로 프로젝트 거래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JI의 시장 규모는 2007년 4,100만 CO<sub>2</sub>t, 5억 달러 규모로 2006년 1,600만 CO<sub>2</sub>t, 1.4억 달러 규모이다.<sup>15)</sup>

프로젝트 거래시장 또한 선물거래(Foreword Market)의 성격을 가진 1차 시장(Primary Market)과 UN을 통해 발행이 확정된 배출권이 거래되는 2차 시장(Secondary Market)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최종 크레딧을 부여받기 전이라도 시장 참가자들이 각 프로젝트가 지닌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 장래에 예상되는 배출권(CER)에 대해 가격을 매겨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프로젝트 개발자의 투자 위험을 낮추어 주는 동시에 더 많은 CDM 프로젝트 투자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한 시장이며, 후자는 이러한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의 배출권, 즉 단순 배출권(EAU)이나 이미 크레딧이 부여된 CDM 프로젝트의 배출권(guaranteed CER, gCER)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sup>16)</sup>

11) World Bank, State and Trend of the Carbon Market 2008; 조용수, 앞의 글, 6쪽 <그림 1> 재인용.

12) 구정한, 앞의 글, 4쪽.

13) 이재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조 및 동향”, 『수은해외경제』(2008. 10), 10~11쪽.

14) 이러한 크레딧은 UN의 인증절차를 거쳐 발행되며 CDM 사업의 절차는 사업발굴/계획단계→사업타당성 확인(validation) 및 정부 승인→사업등록(registration)→모니터링→사업 검증 및 인증(verification & certification)→CERS의 발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15) 이재우, 앞의 글 11쪽.

16) 조용수, 앞의 글, 5쪽.

그런데 할당량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은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배출권이 거래되는 반면 프로젝트 거래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출권의 발행이 승인되기 이전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양 거래시장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시장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CER, ERU)이 UN의 승인 절차를 밟아 발행된 이후에는 할당량 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두 시장은 상호 영향을 주게 된다. 즉,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향후 할당량 시장에서 신규 배출권의 공급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아직 발행이 확정되지 아니한 위험성을 내포한 상품으로 자체의 가치보다는 확정 배출권의 가격, 즉 할당량 시장에서 결정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에 큰 영향을 받으며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세계 탄소시장은 두 시장의 상호 연결 및 영향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소는 세계적으로 약 10개가 있으며 대부분 할당량 거래시장이고 프로젝트 거래는 각각이 사업 성격이 달라 단일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프로젝트 단위로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거래는 UN의 ITL(International Transaction Log)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 (2) 컴플라이언스 시장과 자발적 시장

교토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장(Compliance Market)과 규정에 관계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EU ETS, JI로 구성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미국의 CCX, 호주의 NSW, 영국의 자발적 UK ETS, 기존의 자발적 탄소 감축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 (3)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 1) EU ETS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는 유럽연합 27개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할당량 거래시장이다. 동 시장은 2005년 1월에 개설되었으며 전력, 석유, 철강 등 6대 산업의 1만 1,5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시장 규모로는 2007년 20.6억CO<sub>2</sub>t, 501억 달러 규모로 전세계 거래량 기준 약 69%, 금액 기준 약 78%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17)</sup>

17) 심의섭, “세계탄소시장과 한국의 탄소종합보험”, 「국제금융위험관리(제9권 제4호)」(2008. 12:3-30), 10쪽.



EU ETS의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으로는 ECX(European Climate Exchange), Nordpool, Pownertnext가 있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과 같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헤지펀드 등과 같은 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되는 상품 또한 EUA(EU Allowance)뿐만 아니라 EUA 옵션, EUA와 CER(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 간의 스왑 등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에서의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감독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이 담당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 배출량 과다 할당,<sup>18)</sup> 핫 에어(Hot Air) 문제,<sup>19)</sup>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sup>20)</sup>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2) 미국의 CCX

CCX(Chicago Climate Exchange)는 미국 시카고에 개장하였으며 참여 주체들은 자발적이지만 법적의무가 따른 배출 허용량을 설정받아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대표적인 자발적 할당량 거래시장이다.<sup>21)</sup> 동 시장은 2003년 거래를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 회원수는 약 300개에 이르고 있다. 거래소 회원들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베이스라인<sup>22)</sup>으로 하여 2010년까지 최소 베이스라인의 6% 이상 감축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목표치 기준하에 배출 허용량이 결정되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회원은 그 초과분을 거래할 수 있다. 기업들은 CCX에 가입함으로써 홍보 효과와 더불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 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고, 실전 경험을 조기에 습득하여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23)</sup>

18) 2005년 할당량과 잠재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만이 본래 취지대로 잠재배출량보다 적게 할당을 하였고, 나머지 19개국은 과도한 할당량을 책정하였다(심의첩, 앞의 글, 11쪽 주 12 재인용).

19) 러시아나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 전환 후 경기침체로 감축 노력 없이 저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 당초 감축목표가 허풍(hot air)임이 드러났다(심의첩, 앞의 글, 11쪽 주 13 재인용).

20) 연초 30유로까지 치솟으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던 2007년 12월 12일 12월물 배출권의 가격은 배출권이 과다하게 할당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2007년말 0.3유로까지 폭락하였다(심의첩, 앞의 글 11쪽 주 14 재인용).

21) 심의첩, 앞의 글, 11쪽.

22) CCX의 베이스라인은 Phase I(2003~2006년) 기간 동안에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Phase II(2007~2010년) 기간에 새로 가입한 회원은 2000년의 배출량도 베이스라인으로 할 수 있다.

23) 구정환, 앞의 글, 5쪽.

### 3) 호주의 NSW

이는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Sales) 주가 2003년 1월부터 주(州) 차원에서 전력 공급자 등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부과함에 따라 형성된 거래시장이다. 시장규모는 2007년 0.25억 CO<sub>2</sub>t · 2.2억 달러 규모로 2006년 대비 거래 규모는 26% 증가하였으나, 2007년 9월 이후 배출권 가격의 급락으로 거래 금액은 오히려 소폭(-1%) 감소하였다. 배출권 가격은 2003년 이래 현물거래 기준으로 꾸준히 10~12AU\$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7년에 4.75AU\$로 급락하였다. 배출권의 일시적 과잉 공급 및 호주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입<sup>24)</sup>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sup>25)</sup>

### 4) 청정개발체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거래시장의 규모는 2007년 7.9억 CO<sub>2</sub>t · 129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어 전체 시장거래량의 약 87%, 금액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어,<sup>26)</sup> 프로젝트 시장의 약 90% 이상은 CDM과 연관되어 있다.<sup>27)</sup>

선진국은 이러한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주요 구매국과 투자대상국을 보면, 구매국으로는 EU가 약 90%, 일본이 11%를 차지하였으며, 투자대상국으로는 중국이 약 73%(CER 거래량 기준), 인도 6%, 브라질 6%의 순서이다.<sup>28)</sup>

최근의 이슈로는 현재 CDM 사업 과정에서 절차의 비효율성, 특정 국가(중국)에의 집중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의 개선 문제가 Post-2012 협상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에서부터 최종 배출권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부분 프로젝트가 중국에 집중되면서 선진국의 지원이 절실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빈국이 소외되고 있다.<sup>29)</sup>

24) National ETS : 호주 정부는 최소 2010년 이전에 국가적 배출권거래 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심의섭, 앞의 글, 11쪽 주 15 재인용).

25) 심의섭, “세계탄소시장과 한국의 탄소종합보험”, 「국제금융위협관리(제9권 제4호)」(2008. 12.3-30), 11쪽.

26) 이재주, 앞의 글, 11쪽; 심의섭, 앞의 글, 12쪽.

27) 구정연, 앞의 글, 5쪽.

28) 심의섭, 앞의 글, 12쪽.

29) 심의섭, 앞의 글, 12-13쪽.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컴플라이언스 거래에 참여할 수 없으며, CDM 사업 참여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거래만을 고려할 수 있다. 2007년 8월 27일 당시 우리나라 CDM 사업은 15개가 UN에 등록되어 있고 예상 감축량 기준 전세계 CDM 사업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즉, UNFCCC의 승인이 필요한 CDM 사업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sup>30)</sup>

### 5) 공동이행제도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 JI)란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기술·자금 등의 지원을 실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사업 또는 흡수량을 증가하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삭감할 수 있던 배출량을 각각의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삭감분에 재배분할 수가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교토의정서의 제6조<sup>31)</sup>에 규정되고 있어 온실가스의 삭감을 보완하는 교토 메커니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JI시장의 규모는 2007년 4,100만 CO<sub>2</sub>t·5억 달러 규모이고, 배출권의 가격은 2007년 평균 8.9유로로 아직 CER(CDM 배출권)의 평균가격(8~13유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sup>33)</sup> 프로젝트 종류로는 메탄 관련 프로젝트(47%), 청정에너지 관련 프로젝트(37%), N<sub>2</sub>O 감축 프로젝트(26%) 순이다. 주요 구매국과 투자 대상국을 보면, 구매국으로는 그동안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가 주요 구매국이었으나 JI 관련 규정의 불확실성의 해소 및 경제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이 다수 발국됨에 따라 일본의 민간부문이 동유럽에 산출되는 배출권의 주요 구매자로 부상하였다. 투자 대상국으로는 과거 동유럽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이동되었다.<sup>34)</sup>

30) 매일경제, 2009. 11. 6.

31) 선진국간 Credit 이전을 위한 공동이행사업 허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http://unfccc.int/resource/docs/convkp/kpeng.html, 2009. 11. 6].

32) http://www.weblio.jp/content/%E5%85%B1%E5%90%8C%E5%AE%9F%E6%96%BD, 2009. 11. 6.

33) 하지만, 2008년 3월 당시 전세계에서 추진되는 JI프로젝트는 총 129개로 2007년 1월 34개에 비하면 거의 4배로 증가하였다(이재우, 앞의 글, 11쪽).

34) 심의섭, 앞의 글, 13쪽.

### Ⅲ.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응한 일본의 법적 전개

#### 1. 서설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많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EU, 미국,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법제도의 정비에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일본의 사법(私法)상 법제도의 정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35)</sup>

#### 2. 온난화대책법의 제정

일본은 「온난화 대책법」(1998년 법률 제117호)이 정비되고,<sup>36)</sup> 2007년 11월 유엔 탄소배출플랫폼인 국제거래로그(International Transaction Log: ITL)에 접속되고, 실제로 배출권이 일본의 국가별 등록부에 이전됨으로써 온난화대책법에 근거한 배출권거래가 시작되었다.<sup>37)</sup> 동법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주요 조문으로는 배출권의 귀속(제30조), 할당량 계좌부의 기록사항(제31조), 관리계좌의 개설(제32조), 대체절차(제34조), 배출권 양도의 효력발생요건(제35조), 질권의 설정 금지(제36조), 배출권의 신탁의 대항요건(제37조), 보유의 추정(제38조), 선의 취득(제39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sup>38)</sup>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실무적인 문제인 관리계좌의 개설 주체(제31조), 배출권 양도의 효력발생요건(제35조), 선의취득(제39조)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1) 배출권 관리계좌의 주체

온난화대책법 제31조 제 1항에 의하면, 일본의 할당량 계좌부에 있어서의 배출권의 관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주체로서「① 국가 또는 ②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내국법인)」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민간의 주체로서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이 아니면 안 되므로 외국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 조합 등은 일본의 할당량 계좌부에 있어서 배출권의 관리 계좌를

35) 헌법상 문제(영업의 자유, 평등, 재정의 문제 등), 행정법상 문제(허가 등) 등 공법상의 문제도 있다(国内排出量取引制度の法的課題に関する検討会, 「国内排出量取引制度の法的課題について中間報告」(2009. 4. 7), 13-30頁).

36) 최종 개정은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67호로 이루어졌다.

37) 平石努, “排出権取引の法的展開”, 「JOI」(2008. 7), 1頁.

38) <http://law.e-gov.go.jp/htmldata/H10/H10HO117.html>, 2009. 11. 6.



개설할 수 없다.<sup>39)</sup>

또한 이와는 반대로 내국 법인이면 주식회사, 합동회사 등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기타 법률상의 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 유럽 배출권 거래 제도(EU-ETS)에 있어서 배출권거래가 활발한 유럽의 기업이 일본기업과 국제거래로그를 가입하여 거래를 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법인은 일본의 할당량 계좌부에 있어서 관리 계좌의 개설을 할 수 없으므로, 관리 계좌의 개설을 위하여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이러한 배출권에 관련한 계좌부의 개설 주체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영국의 배출권 등록부에서와 같이 외국법인이나 개인이라도 배출권의 관리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나의 주체가 복수의 관리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 배출권 양도의 효력발생요건

온난화대책법 제35조 제1항에 있어서 배출권의 양도는 배출권의 대체에 의해 양수인이 그 관리 계좌에 해당 양도와 관련되는 배출권의 증가의 기록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있어서는 타국에 존재하는 계좌의 배출권의 대체에 관해서는, 해당 국가 및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무국으로부터 해당 대체의 완료 통지를 수령함으로써 제1항의 증가의 기록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sup>40)</sup> 즉, 배출권의 양도는 배출권 등록부상의 양수인의 계좌에 기록하는 것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도한 배출권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배출권 등록부상의 양수인의 계좌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민법에 의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의 인도나 부동산의 등기에 의한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온난화대책법에 근거하는 배출권의 양도는 민법에 근거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일반 원

39) 第三十一条(割当量口座簿の記録事項) ①割当量口座簿は、次に掲げる口座に区分する°  
一 国の管理口座  
二 国内に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以下「本店等」という°)を有する法人(以下「国内法人」という°)の管理口座.

40) 第三十五条(算定割当量の譲渡の効力発生要件) ①算定割当量の譲渡は、第三十四条の規定に基づく振替により、譲受人がその管理口座に当該譲渡に係る算定割当量の増加の記録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② 他の締約国に存在する口座への算定割当量の振替に関す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他の締約国及び事務局からの当該振替の完了の通知を受けたことをもって同項の増加の記録を受けたものとみなす.

칙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배출권의 양도는 양수인이 그 관리 계좌에 있어서 해당 양도에 관련한 배출권의 증가의 기록을 수령함이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한 배출권 양도의 기록에 대하여 환경성(環境省) 및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에 신청하여 실제로 기록이 행하여지기까지의 표준처리기간이 전자 신청의 경우 8일, 서면 신청의 경우 15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의 배출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환경성 및 경제산업성에 배출권 등록부에 있어서의 해당 양도의 기록을 신청해도 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배출권의 양도를 하는 당사자로서는 당해 기간에 있어서 결제 리스크를 지게 된다. 아직까지는 일본의 배출권 등록부에 관리 계좌를 개설해 배출권의 거래를 실시하는 주체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만큼 결제 리스크가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배출권 거래의 참가자가 향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의 리스크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표준처리기간으로서 전자신청은 8일, 서면신청은 15일이라고 정하여져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배출권 양도와 관련되는 인도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것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된다. 유럽에서는 배출권거래에 국제 스왑과생금융협회(The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가 정한 계약서류가 자주 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서류는 배출권의 인도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ISDA의 계약서류에 한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대상물의 인도의 날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금의 결제, 인도지연의 처리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일본의 배출권 등록부와 관련되는 실무에 대해 배출권의 양도의 기록을 하는 날, 즉 양도의 효력발생일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어서 그것에 대응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일본의 배출권 등록부에 개설된 계좌와 타국의 등록부에 개설된 계좌와의 사이에 배출권의 제2차 거래(secondary trade)<sup>41)</sup>를 실시하는 경우에, 일본에 있어서 양도의 효력발생시점과 타국에 있어서 양도의 효력발생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즉, 배출권의 양도를 하여, 일본의 계좌로부터 타국의 계좌로의 배출권(각 배출권은 시리얼 넘버가 첨부되어 있어 특정

41) 제1차시장(Primary Market)은 프로젝트 거래시장 내지 선물거래(forward Market)의 성격을 가진 시장을 말하며, 제2차시장(Secondary Market)은 UN을 통해 발행이 확정된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이재우, “EU-ETS탄소배출권 가격 경영요인 분석: 단기 및 중기적 요인을 중심으로”, 『수은해외경제』(2008. 10), 7쪽).



이 가능하다)이 이전되는 경우, 타국에 있어서는 타국의 계좌상으로 배출권의 기록이 행하여진 시점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타국 및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사무국으로부터 일본 정부가 당해 대체의 완료 통지를 수령한 시점에 있어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순조롭게 완결되면 양도의 효력발생시점이 상이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어떠한 시스템 에러에 의하여 당해 타국 및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사무국으로부터의 통지가 지연되는 경우나, 양도의 효력발생시점이 차이가 있는 동안 양도 당사자에게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는 분쟁의 발생 여지가 있다.

### (3) 배출권의 선의취득

온난화대책법 제39조는, 대체에 의한 관리 계좌에 있어 배출권의 증가의 기록을 수령한 계좌 명의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배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2)</sup> 이것은 배출권 등록부상의 기록을 신뢰하여 배출권의 거래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동산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도가 일본 민법 제192조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상기의 제도 취지로부터 온난화대책법 제39조에 의하여 치유되는 하지는 배출권에 관한 양도인의 무권리뿐이고, 양도인이 무권대리인이었을 경우나 거래행위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온난화대책법 제39조에 의하여 양수인은 배출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sup>43)</sup> 또한 타국의 배출권 등록부로부터 일본의 등록부에 개설된 계좌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온난화대책법 제39조에 의하여 선의취득의 적용은 조문상 명확하게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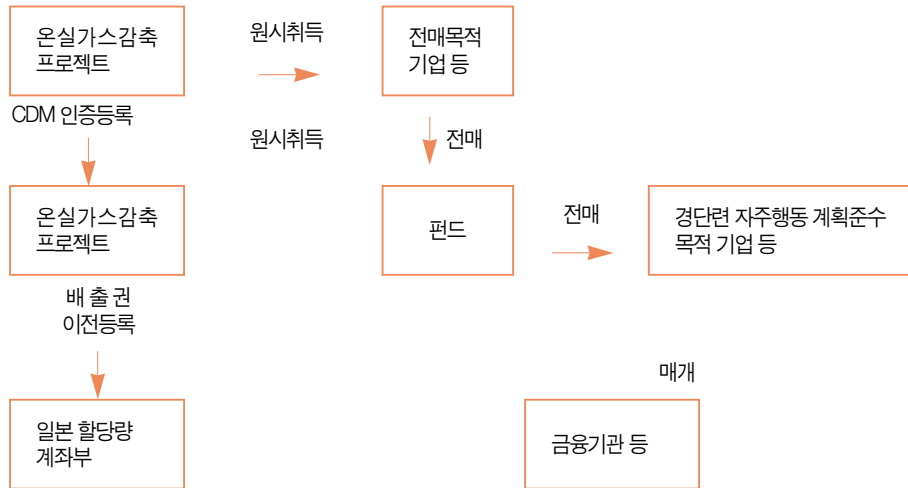
## 3. 배출권에 대한 금융법 및 기타 업법상 취급

### (1) 배출권거래의 전형적인 예

먼저, 배출권거래의 전형적인 예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42) 第三十九条(善意取得) 第三十四条(第六項を除く)の規定に基づく振替によりその管理口座において算定割当量の増加の記録を受けた国又は口座名義人は、当該算定割当量を取得する<sup>°</sup>ただし、国又は当該口座名義人に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43) 이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무권대리인,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소수의 견해가 있다(이철송, 「회사법강의」(박영사, 2009. 9), 290쪽).



## (2) 배출권거래에 대한 금융법 등의 취급

배출권이란 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된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의 하나로, 교토의정서 부속서 I 국(이른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배출권에 대한 법적 성격<sup>44)</sup>과 관련하여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유가증권」(동법 제2조 1항·2항) 또는 「금융상품」(동법 제2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배출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당초부터 취득하는 방법과 그러한 배출권을 취득한 기업 등으로부터 전매를 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기관 등은 이러한 거래에서 매개업자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펀드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가이다. 하지만, 배출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권의 취득 내지 전매하는 펀드 자체에 대하여 금융상품거래법 등에 근거한 라이선스의 취득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겠다.<sup>45)</sup>

둘째,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투자운용업자의 업무에 포함 여부이다. 일본은 2007년 9월 말부터 금융상품거래법이 시행되고,<sup>46)</sup> 나아가 은행법 등이 개정됨

44)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수치설, 재산설, 권리설, 자격설 및 법적 지위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배출권이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종래의 권리나 물건으로 분류하기에는 곤란하다(최문희, 앞의 글, 94~102쪽).

45) “排出權取引”, 「クライアント・ブリーフィング」(2007. 9), 3頁.

46) <http://law.e-gov.go.jp/htmldata/S23/S23HO025.html>, 2009. 11. 6.



으로써, 금융기관이 배출권 거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 거래업자(제1종 금융상품 거래업 또는 투자운용업에 종사하는 자)는 ① 배출권의 현물거래나 그 매매·중개·대리,<sup>47)</sup> ② 배출권의 디리버티브 거래(derivative trade)나 그 매매·중개·대리<sup>48)</sup> 및 ③ 배출권에 관한 컨설팅 업무<sup>49)</sup>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sup>50)</sup> 다만, 금융기관에 의한 상기의 배출권거래에 관해서는 그 취급이 가능한 배출권의 종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에 있어서 인정되는 배출권은 교도의정에 의한 배출권(CER, ERU, AAU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에 한정되어 있다.<sup>51)</sup> 「기타 유사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EU-ETS)에 대해 사용되고 있는 배출권으로 EUA(EU Allowance)가 이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다.<sup>52)</sup> 뿐만 아니라 은행법상으로도 은행은 그 본체에 있어서, ① 배출권의 현물거래의 매매, ② 배출권의 디리버티브 거래나 그 매매·중개·대리(잔금 결제의 것만)<sup>53)</sup> 및 ③ 배출권에 관한 컨설팅 업무(은행의 부수업무라면)<sup>54)</sup>를 하는 것이 인정됨으로써 배출권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신탁법상의 신탁과 관련한 것이다. 즉, 배출권을 취득한 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할당량 계좌부(국가별 등록부)에 그 취득을 등록하지만 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내국법인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의 경우 개설이 불가능하고 또한 할당량 계좌부의 이용에는 1회 신청시 약 6,200엔 정도의 거래비용이 들며 등록변경의 표준 처리기간이 약 8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배출권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의 이용을 검토하고 있다. 즉, 배출권을 신탁은행 등에 신탁하고 그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매매 또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위에서 언급한 불편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금융상품거래법상 신탁수익권이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거래업자에게 금융상품거래법상 등록이 가능한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sup>55)</sup>

47) 金商業府コ令案71 条16号.

48) 金商業府コ令案71 条17号.

49) 金商法 35条 1項 柱書.

50) 일본 金融商品取引法 제35조 제2항 7호,

51) 金商業府令案 71条 16号.

52) 平石努, 앞의 글, 3頁.

53) 동조 14号·15号, 同法 施行規則案 13条의2 第1項 2号·3号.

54) 일본 銀行法 10条 2項 柱書.

55) “排出權取引”, 「クライアントーブリ・フィンガ」(2007. 9), 3-4頁.

#### 4. 카본 · 오프셋

임의적인 카본 · 오프셋(offset)에 이용되는 교토의정서 내지 기타 법제도의 배  
경 없이 VER(Verified Emission Reduction), VCU(Voluntary Carbon Unit) 등으  
로 불리는 배출권이 이것에 포함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8년 2월 환경성(環境省)에 의해 「일본에서의 카본 · 오  
프셋(offset)의 본질에 대하여(지침)」가 공표되어 카본 · 오프셋에 대한 검토가 진  
행되고 있다.

카본 · 오프셋이란 시민, 기업, NPO/NGO, 자치체, 정부 등의 사회의 구성원이  
스스로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인식해, 주체적으로 이것을 삭감하는 노력을 실시  
함과 동시에 삭감 곤란한 부분의 배출량에 대하여 다른 장소에서 실현된 온실가  
스 배출 삭감 · 흡수량 등(크레딧)을 구입하는 것 또는 다른 장소에서 배출 삭  
감 · 흡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나 활동을 하는 것 등에 의하여 그 배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카본 · 오프셋은 영국을 비롯한 EU,  
미국, 호주 등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민간을 중심으로 시  
작되었다.<sup>56)</sup> 특히,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논의하고 있다. 대처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우선, EU 등에 있어 카본 · 오프셋의 대처에 대해서는 법제도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인 VER, VCU 등으로 불리는 배출권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본  
에서는 카본 · 오프셋에 관해서 교토의정에 근거를 둔 배출권(특히 CER)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다만, 카본 · 오프셋에 대해서 스스로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보  
충하기 위해서 취득한 배출권을 다른 사람이 중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보충  
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더블 · 카운팅의 문제). 카본 · 오프셋에 대처  
하려는 자, 또한 카본 · 오프셋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업자는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배출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며, 그것이 더블 카운팅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sup>57)</sup>

또한 일본에서 카본 · 오프셋에 관해서는 현재의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는 만  
큼 배출권 그 자체가 아니라, 배출권을 뒷받침하는 자산으로 신탁수익권을 사용  
하는 경우가 있다. 위의 금융상품거래법 및 기타 금융 관련업법에 대해서는 배출  
권은 금융상품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업(業)으로서 배출권의 매매를 행  
하는 것은 특단의 허가나 인가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신탁수익권도 금융상품의

56) 環境省, 「我が国におけるカーボン・オフセットのあり方について(指針)」(2008. 2. 7), 3頁.

57) 平石努, 앞의 글, 4頁.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카본·오프셋의 대처 방안 중에 신탁수익권의 취급에 관해서도 그 형태에 따라 금융관련업법의 적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카본·오프셋에 관한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서비스 내용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카본·오프셋에 관한 서비스는 본업으로서 유가증권의 취급, 계좌의 관리 등을 할 때 신용이 좋은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친숙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인정된 배출권거래는 일정한 범위로 한정되고, 금융기관이 카본·오프셋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그 업무 제공은 업법(業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58)</sup>

#### IV.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응책

##### 1.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전망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Post-2012 기후변화 체제에서도 탄소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탄소거래 연구단체인 NCF(New Carbon Finance)는 미국이 총량거래제(Cap and Trade)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도입할 경우, 2020년경 미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규모가 EU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59)</sup>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CDM 사업은 15개 사업이 UN에 등록되어 있고 예상감축량 기준으로 전세계 CDM 사업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UNFCCC의 승인이 필요한 CDM 사업과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7년 12월 말 당시 103건의 감축사업의 등록 승인되었으며, 이들 사업에서 예상되는 감축량은 연간 이산화탄소 205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2007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 전략」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를 통하여 발급한 감축 실적(Korean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감축 실적의 질이 높아 UNFCCC의 승인이 필요한 CDM 사업 수준인 것은 CER 시장에 수출하고, 미국시장이 인정하는 감축 실적은 CCX 시장에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감축 비용

58) 平石努, 앞의 글, 4頁.

59) 심의섭, 앞의 글, 13쪽.

을 최대 6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sup>60)</sup> 정부 또한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안으로 확정하는 수순에 들어갔다.<sup>61)</sup>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향후 준비해야 할 점을 지적한다.

## 2. 법적 측면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대응책

향후 탄소권거래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 교토의정서 가입에 따른 사전 준비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부속서 I의 비협약국이며, 이산화탄소 세계 9위의 배출국이지만, 아직 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어 배출량 감축이라는 교토의정서의 법적 구속성은 제외되는 개발도상국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컴플라이언스 거래에 참여하기는 어렵고, CDM 사업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거래만을 고려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Post-2012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와 관련하여,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포스트 교토체제의 합의내용이 향후 탄소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탄소배출권의 금융상품 거래대상에 포함될 경우 법적 문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탄소배출권이 금융상품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거래 방법으로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실현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현물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선도거래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sup>62)</sup> 일본의 경우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지구온난화대책법, 금융상품거래법 및 기타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거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8월 29일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입법에

60) 연합뉴스, 2009. 11. 8자.

61) 매일경제, 2009. 11. 6일자.

62) 野村佐智代, “金融市場に見る排出量取引の現状と問題点”, 「埼玉学園大学紀要(経営学部篇) 第8号」(2008. 12), 75頁.



고를 통하여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부과,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등을 포함시켰으며,<sup>63)</sup> 이를 모델로 하여 2009년 1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입법예고되었다. 나아가,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기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며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소」<sup>64)</sup> 등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내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기본 계획」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배출권 거래의 주체, 할당량 계좌부의 기록사항 관리계좌의 개설 대체절차, 배출권 양도의 효력발생요건, 질권의 설정 금지, 배출권의 신탁의 대항요건, 배출권보유의 추정, 선의취득 등에 대한 규정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선물과 탄소배출권 관련 파생상품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탄소배출권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상품인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한국거래소 회원은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업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선물거래법상의 선물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본도 우리와 유사하다. 그런데 미국의 CCX의 경우 주정부, 기업,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감축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영국도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회원 자격의 범위를 현재의 한국거래소 회원 자격 범위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2006년 유럽에서 EUA가 과다하게 보급되어 가격이 급락한 사례를 볼 때, 배출권이 과다하게 보급되어 배출권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

63) 더 데일리, 2008. 8. 28자.

64)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최근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탄소거래소 설립을 위하여 한국거래소 내부에 탄소시장 개설 준비단을 설치하였다(심의섭, 앞의 글, 20쪽).

다. 그래야 배출권의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감축 의무의 위반에 대한 벌금은 배출권 가격의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벌금도 낮게 설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배출권 할당방식에는 경매 또는 무상 배분방식이 있는데, 경매 방식은 신규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상배분 방식은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두 가지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사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중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신규 참여자에게는 어떤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거래에 대한 어떤 금융기관이 관련되며, 그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정 등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일본의 카본·오프셋 제도의 도입 고려 필요

카본·오프셋(offset)이란 시민, 기업, NPO/NGO, 자치체, 정부 등의 사회의 구성원이 스스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식해, 주체적으로 이것을 삭감하는 노력을 실시함과 동시에 삭감이 곤란한 부분의 배출량에 대하여 다른 장소에서 실현된 온실가스의 배출 삭감·흡수량 등(크레딧)을 구입하는 것 또는 다른 장소에서 배출 삭감·흡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나 활동을 하는 것 등에 의하여 그 배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 제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EU, 미국, 호주 등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도의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일본의 제도에서 언급하였던 몇 가지의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